

구미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발의연월일	2017. . .
발 의 자	박세진 의원 외 6명

구미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박세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7. . .

발 의 자 : 박세진, 강승수, 김복자, 김재상
김태근, 정하영, 허 복 의원(7명)

1. 제안이유

- 구미시 청소년의 스마트폰·인터넷 의존 및 게임 중독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각종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지역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교육, 상담, 치료, 기술적 조치 등 종합적 보호조치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구미시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등 관련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청소년의 생산적이고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과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보호조치 및 기술적 보호조치(안 제5조 ~ 안 제6조)
- 라. 청소년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경비 지원규모 및 방법을 규정함(안 제8조)
- 바.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단체간 협력체

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종합적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위하여 법
인·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청소년보호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구미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스마트폰 게임중독, 정보통신망으로 유통되는 해로운 게임·도박·음란·폭력정보 등으로부터 구미시 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용시설”이란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 등 구미시 소속기관·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이용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란 청소년 이용시설에서 제공하고 교육생, 방문자 등이 이용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4. “게임중독”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5. “인터넷중독”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하며,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한다.
 6.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말하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포함한다.
 7.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이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8. “종합적 보호조치”란 청소년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교육, 상담, 치료,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포함한 조치를 말한다.
 9. “기술적 보호조치”란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인터넷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관리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게임·도박·음란·폭력정보 등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10. “스마트쉼센터”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에 따라 전국 광역시·도에 설치·운영 중인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
2. 신청 가정 내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
3. 청소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제5조(종합적 보호조치) 시장은 청소년의 생산적이고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 예방교육 강사 파견·교육 실시
2. 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 치료 등 지원
3. 그 밖에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기술적 보호조치) 기술적 보호조치의 추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권장
2.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사용 권장

3. 경상북도 및 공공기관에서 보급하는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보호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권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민간개발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구입·보급

제7조(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촉진) 시장은 청소년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자 교육 및 홍보
2.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보급기관과 협력하여 설치 확대 및 기능 개선
3.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 기관·단체에 기능 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제8조(지원규모 및 방법) 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방법,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 및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경상북도청소년진흥원, 경상북도스마트쉼센터 등 청소년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사무 위탁) ① 시장은 종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 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전담부서 지정) 시장은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보화 업무 담당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구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 보호법」, 「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생략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4. ~ 8. 생략

제27조(인터넷게임 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터넷게임 중독(인터넷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

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등 매체물의 오용·남용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9. 생략

20. "인터넷중독"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제30조의6(인터넷중독대응센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이하 "대응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대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터넷중독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2.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홍보
3. 그 밖에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그 밖에 대응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이용자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 ④ 생략

□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 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의 제공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차단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미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구미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을 위한 종합적 보호조치 및 기술적 보호조치에 따라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5조 ~ 안 제6조)
- 구미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을 위한 청소년 유해 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촉진을 위하여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산됨(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함
 -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나.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을 위한 사업은 재정지원이 가능한 사업의 범위가 포괄적이며,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소요재정의 추계가 어려움(안 제5조)

- 청소년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등을 위한 세출예산이
연 30백만원 미만으로 예상됨(안 제6조 ~ 안 제7조)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내 용	산출내역	금액
합 계		27,600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 설치	○ 다중이용시설 (7개소) - 도서관(중양, 선산, 봉곡, 정수, 인동) - 선산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 100,000원 x 12개월 x 7개소	8,400
	○ 단독 PC (200대) - 지역아동센터(10대) - 신청가정(190대) · 4,000원 x 12개월 x 200대	9,600
	○ 휴대폰 (200대) - 신청가정(200대) · 4,000원 x 12개월 x 200대	9,600

※ 추후 증액될 수 있음

4. 작성자

- 정보통신담당관실 지방전산주사 이정오(480-6652)